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743
------	-----

제안년월일: 2009. 2. 24.

제안자: 교육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와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평생학습관에 설치되는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평생학습관에 설치하는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변경함(안 제8조제1호).
-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없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2항 중 “실무협의회는 협력망 관계자로 구성한다”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로 한다.
- 안 제8조제1호 중 “평생학습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안 제11조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b>제5조(평생학습협력망 구축) ① (생략)</b></p> <p>1.~4. (생략)</p> <p>② 협력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실무협의회를 두며, <u>실무협의회는 협력망 관계자로 구성한다.</u></p>	<p><b>제5조(평생학습협력망 구축) ① (개정안과 같음)</b></p> <p>1.~4. (개정안과 같음)</p> <p>② ..... ..... <b>그</b> <u>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u></p>
<p><b>제8조(위원회의 기능) (생략)</b></p> <p>1. 평생학습관의 <u>지정 및 운영</u>에 관한 사항</p> <p>2.~5. (생략)</p>	<p><b>제8조(위원회의 기능) (개정안과 같음)</b></p> <p>1.....<u>운영</u>.....</p> <p>2.~5. (개정안과 같음)</p>
<p><b>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b></p>	<p><b>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b> ..... ..... .....</p>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 활성화 및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 개발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지정 대상은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교육기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공공시설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④ 평생학습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당해 기관이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시설·조직 및 예산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
4. 전문인력(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5. 지역 내 평생교육시설 현황
6.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다.

③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공공성 및 지역의 대표성
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적합성
3.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연계성
4.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5. 그 밖에 평생학습관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

④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지정 평생학습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평생학습협력망 구축) ① 평생학습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 평생교육기관과 상호 협약에 의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1. 인적·물적 평생교육 자원의 공동 활용
  2. 설립 목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자원과 지역사회 학교간의 교류·협력
  4. 평생학습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② 협력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지정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자료의 요구 및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평생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의 평생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4. 평생학습관의 대표 관장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 및 직원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위원회) ① 지역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학습관 단위로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평생교육 전문가, 지역주민, 그 밖에 당해 평생학습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관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기능, 회의, 운영 등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지정서	
기 관 명		
위 치		
지정기간		
<p>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합니다.</p>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교육감</p>		

.....  
(다음 페이지에 계속)